I PARK 대구 범어 아이파크

일반공급 구비서류 안내

구비서류 안내 [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03.29.(금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]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공통 서류 (추첨제)	○		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본인	• [견본주택]에 비치
	○		서약서	본인	• [견본주택]에 비치
	○		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[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/ 단, 대리신청 불가] ※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 확인
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만 가능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전원) /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확인 /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부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까지 조회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
일반 공급 (가점제)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•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	○	청약통장 순위확인서	배우자	• 일반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 *(청약홈) 청약홈 〉 청약자격확인 〉 청약통장 〉 순위확인서 발급 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〉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(청약통장 가입은행) 창구 방문 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		○	당첨사실 확인서	배우자	• 일반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 *(청약홈) 청약홈 〉 청약소통방 〉 APT당첨사실 조회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•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※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'전체 포함'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존속 직계비속	•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까지 발급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
		○	최하층 우선배정입증서류	본인	•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(군 복무 기간을 명시)
		○	해외 근무자(단신부임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증빙서류 확인
부적격 통보 받은자		○	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	해당 주택	• 일반 주택 :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• 무허가 주택 :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• 폐가, 멸실 주택 :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소형저가 주택 등)
		○	당첨사실 소명 서류	해당자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		○	단신부임 입증 서류	본인	•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: ① 비자발급내역,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세대원	•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까지 발급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
		○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	해당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•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위임용 인감증명서 (본인발급용)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'24.03.29)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,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 가 생략되어 발급되오니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서류 발급 시 모든 서류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※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적격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요약·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